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895 |
|----------|-----|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체계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2023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 m^2 , 건물연면적 10,830.25 m^2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추경개요

○ 추경 예산 : 168,000천원

※ 23년 총 출연금액 : 76,022,567원 (기정 출연금액 : 75,854,567천원 포함)

○ 추경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청년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기 노력하는 청년 채무자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복귀 지원을 위해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 토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추경 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168,000천원

| | |
|--------------------|-----------|
|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168,000천원 |
| ·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 150,000천원 |
| · 홍보비 및 교육자료 제작비 등 | 18,00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에서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2 서울시복지재단 일반현황

1. 서울시복지재단 현황 및 개요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었음.

가. 조직 및 인력 관련

- '23년 7월 기준 복지재단은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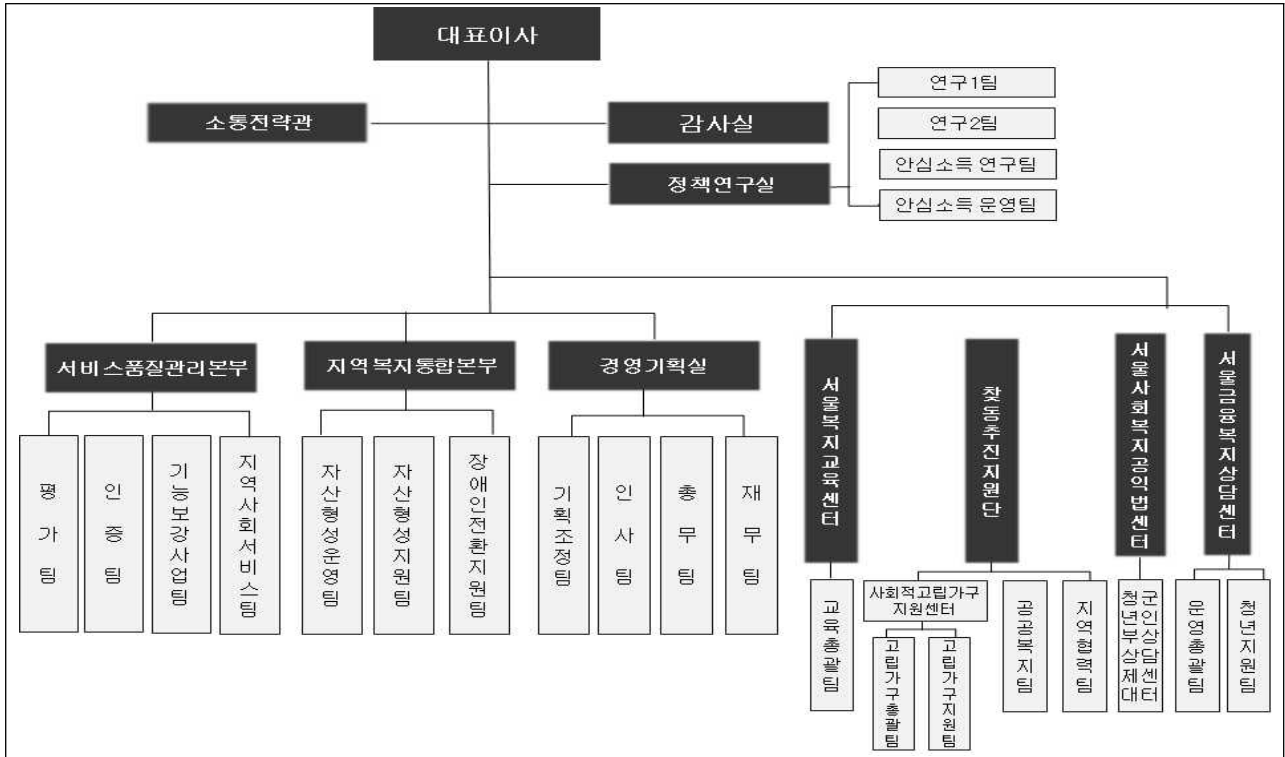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표1〉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3. 7월. 기준)



- 현재 인력 정원은 187명, 현원 187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2〉 서울시복지재단 정·현원표

(’23. 1. 1. 기준, 단위: 명)

| 구분 | 계 | 대표이사 | 소계 | 일반직·특정직 | | | | | | | | 임피제 별도 급 |
|----|-----|------|-----|---------|----|----|----|----|----|----|-----|----------------|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미화직 | |
| 정원 | 187 | 1 | 186 | 2 | 10 | 22 | 28 | 29 | 56 | 37 | 2 | - |
| 현원 | 187 | 1 | 186 | 2 | 9 | 21 | 28 | 29 | 47 | 44 | 2 | 4 |

* 기간제근로자 33명 별도

나. 추가 출연의 적정성

- 복지재단은 기정예산에서 1억6천8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음. 추정 사유는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 추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추정 사업을 통해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것임.

〈표3〉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 (A-B) |
|-----|--------------------|--------------------|-----------------|
| 계 | (x-) 76,022,567 | (x-) 75,854,567 | (x-) 168,000 |
| 출연금 | (x-) 76,022,567 | (x-) 75,854,567 | (x-) 168,000 |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면책 예정 및 면책 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 150명에게 지원하고자 1억5천만원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금융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재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청년동행센터’란 복지재단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15개 지역센터 중 3개 센터를 강남권역으로 통합하여 ‘청년동행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추진 중이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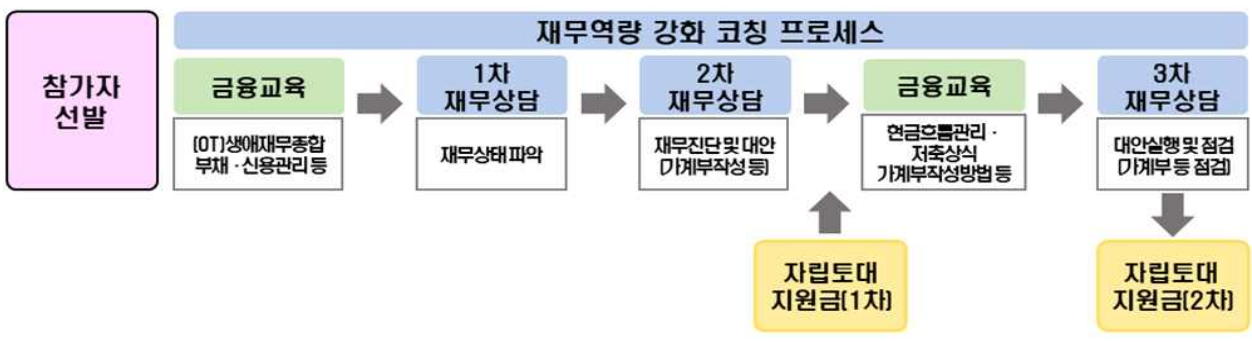
청년사업(청년재무길잡이 사업 및 청년통장 참가자 재무상담)을 청년동행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여 청년층에 특화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 상 : 개인회생 면책예정(3개월) 및 면책완료(6개월이내) 청년 150명
 - 서울시 거주 만19세~만39세 근로중인 기준중위소득 140%이내 청년
- 내 용 : 개인회생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상담 및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지급(50만원×2회)
- 추진체계 및 역할

| 서울시 | 서울희생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 • 사업예산 확보 • 참가자 모집공고 • 관계기관 연계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책대상자 사업홍보 • 사업신청자 면책결정일, 미납 및 잔여변제 회차 회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자 건보료 기준 소득수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관리총괄 • 재무코칭 및 금융교육 • 토대지원금 지급 |

○절 차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청년층의 부채 과다로 매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마련 및 자립토대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개인회생신청 현황은 “30세 미만 청년’ 신청 추이는 10.7%(2020년)→14.1%(2021년)→15.2%(2022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이라 하겠음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영테크 사업과 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²⁾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대상과 지원기준은 상이하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채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취지는 필요하나 유사한 사업들이 기 추진 중에 있는바, 신규사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2)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은 금융위기 청년의 성공적 재기와 재도산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면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최대3년 →2년, 5개 결격사유 제외)검토하여 인가하는 사업임.

3 종합의견

- 본 출연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복지재단의 출연 여부에 관해 결정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시 복지재단에서 편성한 추경사업안의 목적·시기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의 적합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금융취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본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현금지원이라는 방법이 사회적인 평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895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시에서는 금융위기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체계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다.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2023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 라.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 건물연면적 10,830.25㎡

○ 관련 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추경 개요

- 추경 예산 : 168,000천원

※ 23년 총 출연금액 : 76,022,567원 (기정 출연금액 : 75,854,567천원 포함)

- 추경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청년층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기 노력하는 청년 채무자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복귀 지원을 위해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특화 자립토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추경 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168,000천원

| | |
|--------------------|-----------|
|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168,000천원 |
| ·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 150,000천원 |
| · 홍보비 및 교육자료 제작비 등 | 18,00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성찬 (☎ 2133-7315)